

#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세칙

제정 2017. 9. 12.

**제1조 (목적)** 이 세칙은 “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 공사감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.)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예외 적용 건축물)** ①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업무 예외 적용 건축물로 한다.

1.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건축물

② 회장은 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용대상 등을 심의토록 할 수 있다.

**제3조(공사감리자 등록 및 구성 절차 등)** 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)** ① 운영규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공사감리자 지정방법은 공사감리자 구성원 중에서 1인을 공사감리자(설계자 포함)로 지정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 등)** ① 공사감리자가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공사감리자 지정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원, 해외 및 지방출장, 교육 등

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정 제외신청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감리계약 방법 및 절차 등)** ①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공사감리자는 공사감

리계약서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계약(이하 “감리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계약서 사본을 협회에 제출한다.

② 운영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감리의 방법 및 절차에 있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고, 지도하는 등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대가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7조(운영회비 운용 등)** ① 운영회비는 500원/m<sup>2</sup>(계약면적)으로 한다.

②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운영회비를 공사감리 계약 후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장은 회원이 납부한 운영회비에 대하여 운영회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회원은 허가권자가 협회에 사용승인 업무대행자선임을 의뢰할 경우 운영회비납부확인서를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장은 협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회비 사용범위·방법·절차 등을 이사회 심의·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규정위반 등에 대한 조치 등)** ① 회원에 대한 징계구분 및 징계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② 공사감리자로 구성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감리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.

1. 최근 2년간 공사감리업무로 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월을 초과 하는 회원
2. 건축주, 시공자, 설계자와 마찰로 인해 분쟁조정 요청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있는 회원

③ 제2항의 해당 회원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기간 등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 이 경우 회장은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.

**제9조(분쟁의 조정)**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 결과를 5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감리대가 및 지급시기 등)** ① 감리대가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의 자율적

인 계약에 따르되 “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가기준”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공사감리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리대가에 대한 정산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.

**제11조(운영세칙 개정)** ① 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운영지침)**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른다.

#### (부 칙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2017. 9. 25. 이후 건축착공 신청된 건축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제1호서식]

## 건축공사 감리자 등록명부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건축공사 감리자 선임신청서

건축물	허가일자	20 . .	허가번호	제 호
	위 치		대지면적	m <sup>2</sup>
	건축규모	지상 층, 지하 층	연 면 적	m <sup>2</sup>
	용 도		구 조	
건축주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계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호		자격번호	
	소재지		전화번호	
공사기간	착공예정일	20 . . . .	사용승인 예정일	20 . . . .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 제6조 및 운영세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 
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자 선임을 신청합니다.

- 불임 서류 -

1.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(동별 개요 포함) 1부
2. 건축허가서 사본(허가조건 포함) 1부
3. 「건축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각 1부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**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귀하**

[별지 제3호서식]

##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

제 20 호

건축물	허가일자	20 . . .	허가번호	제 호
	위 치		대지면적	m <sup>2</sup>
	건축규모	지상 층, 지하 층	연 면 적	m <sup>2</sup>
	용 도		구 조	
건축주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계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 호		자격번호	
	소 재 지		전화번호	
공 사 감리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 호		자격번호	
	소 재 지		전화번호	
공사계획	착공예정일	20 . . .	사용승인 예 정 일	20 . . .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 제6조, 운영세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공사 감리자로 지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.

20 년 월 일

**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**

## [별지 제4호서식]

##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대장

[별지 제5호서식]

###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제외 요청서

감리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호		자격번호	
	소재지		전화번호	
기간	201 . . . ~ 201 . . .			
사유				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 제7조 및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제외를 요청 합니다.				
20 년 월 일				
신청인 : (인)				
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귀하				

[별지 제6호서식]

## 분쟁조정신청서

건축물	허가일자	20 . . .	허가번호	제 호
	위 치		대지면적	m <sup>2</sup>
	건축규모	지상 층, 지하 층	연 면 적	m <sup>2</sup>
건축주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계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소재지		전화번호	
공사 감리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소재지		전화번호	
시공자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분쟁사유				
위와 같은 분쟁사유로 인하여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및 운영세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.				
20 년 월 일				
신청인 성명 (인)				
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귀하				